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ING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ING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1년 4월 2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4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3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 (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4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4
5. 인수에 관한 사항.....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5
4. 집합투자업자.....	5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7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5
1. 재무정보	2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4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5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6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7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7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7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8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0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3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4
6. 기금의 조성 및 사용	44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 27763)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7764	35822	94568	94569	94570	94579	27766	27767	2776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3조좌까지 모집(판매)이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ingim.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 27763)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7764	35822	94568	94569	94570	94579	27766	27767	2776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01.03	최초설정
2005.06.07	매입,환매 기준시간 적용
2006.10.17	기금 조성 및 사용관련 규정 추가
2008.10.20	ING 국민1억만들기주식투자신탁1호로 명칭변경
2008.10.20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에 따른 약관 변경
2009. 04.29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으로 명칭변경
2010. 03. 16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2010년 세제변경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분배금 유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우편발송 대신 공시로 갈음 가능한 경우 반영
2010. 04. 09	책임운용역 변경
2010. 05. 03	판매보수 인하
2010. 06. 01	종류형으로 변경, 분배금 지급방법 및 기금 조성방법 변경, 책임 운용역 변경 등
2010.10.25	-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 :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 신설 -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 종류C->종류C1 -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1.4	최근결산에 따른 정기 갱신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ING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빌딩6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0.5. 현재)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박형렬	1968	팀장	8	2,170	현 ING 자산운용 주식액티브팀장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KTB자산운용 리서치, 주식운용팀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양신호	2007.10.31-2008.02.14
이승준	2008.02.15-2010.04.09
정윤식	2010.04.09-2010.05.31
박형렬	2010.06.01 -현재

주1)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2010-06-03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종류 C1	2003-01-03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2	2010-10-25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2010-10-25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2010-10-25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2010-10-2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e	2010-06-03	인터넷 가입자
종류 C-i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 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종류 C-d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 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매입 시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시
집합투자업자보수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00	1.500	1.375	1.250	1.125	1.000	0.900	0.050	0.060	
신탁업자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함
②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③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④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서조항참조)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가능
⑤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대여
⑥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⑧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②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③~⑥,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법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계열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기타 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기별/지수대별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적립식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② 종목분석에 입각한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op Down(하향식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Top Down Approach

개별주식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 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자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Bottom Up Approach

개별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 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이 선택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종목선택 전략

수익 및 가치 모델을 활용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및 기업방문, 외부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등 지속적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종목을 발굴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합니다.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④ 기타자산에의 투자

유동성자산등에의 투자는 규약에서 정한 비중 및 신용등급 자산에 따라 투자합니다.

* 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위험관리

① 투자유니버스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②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③ 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3)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편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년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주식시장 및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의 이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복리 운용의 효과면에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고, 보유종목에 대하여 부도발생 또는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

	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ING자산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40% 초과, 최고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중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주1)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ING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각 위험자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이하), 기업어음(CP)(A3미만), 상품(Commodity), 리츠(REIT's), 출자지분(유한, 합자회사, 조합 등),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② 중위험자산이란 회사채(BBB-이상), 기업어음(CP)(A3이상),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③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특수채,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주6)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ING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ING자산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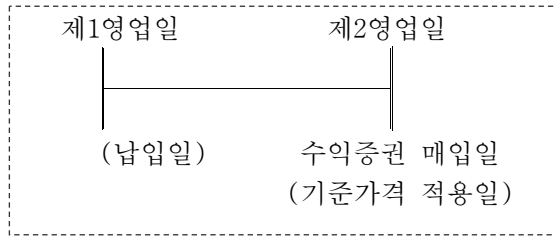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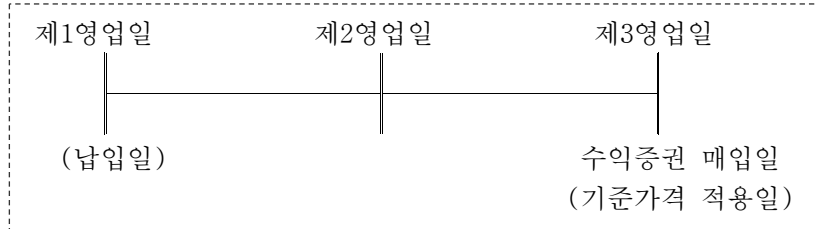
구 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종류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e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종류C-i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종류C-d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2010년10월 25일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일괄 전환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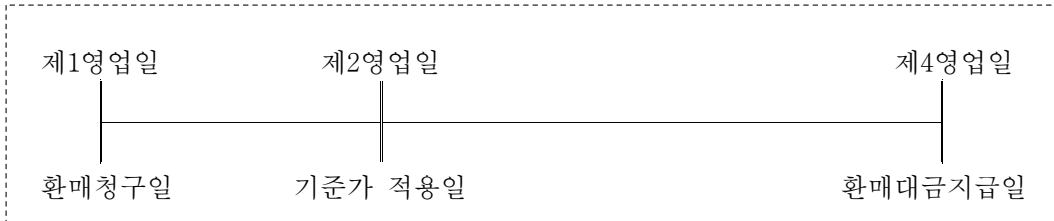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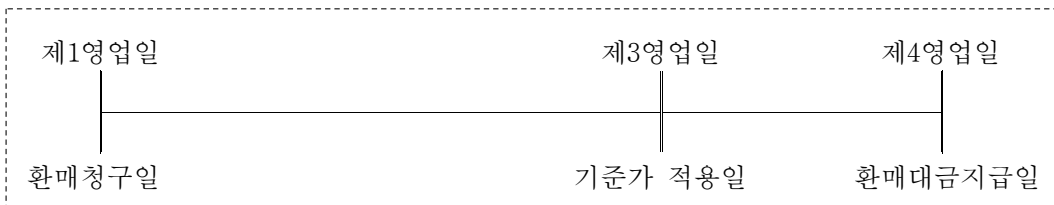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빈번한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거래비용 및 각종기회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환매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류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류A	종류 A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②수익자는 적립식인 경우 목표금액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금액(기준가격x수익증권좌수)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액적립식인 경우 평가금액이 목표금액에서 최종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경우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주)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목표금액 지정방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할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④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3)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처리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③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추가 납입이 발생하였고, 이 추가납입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부과
 -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위 전환방법의 (가)에 불구하고 2010년 10월 25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본 신탁계약 시행일 이전 종류C 수익증권을 매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부터 종류 C5 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체계가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은 불가 합니다.
- ※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후 전환하는 경우 판매사간 전산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판매사별로 매영업일 혹은 월별 특정일 또는 주별 특정일 등 전환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의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유가증권으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	----------------	------

	종류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없음								매입시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매입시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업자보수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900	1.500	1.375	1.250	1.125	1.000	0.900	0.050	0.060	
신탁업자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타비용	0.0012	0.0039	0.0028	0.0035	0.0036	0.0036	0.0013	0.0039	0.0039	-
총보수 및 비용	1.5662	2.1689	2.0428	1.9185	1.7936	1.6686	1.5663	0.7189	0.7289	-
증권 거래비용	0.9333	0.8183	0.9028	0.8734	0.8674	0.8607	0.9249	0.8183	0.8183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0.01.03 ~ 2011.01.02]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 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0.01.03 ~ 2011.01.02]

-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5)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
- 6)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설정된 펀드로 업무위탁한 후로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동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214	560	929	1,966
종류C1수익증권	227	660	1,062	2,145
종류C-e수익증권	164	510	897	1,916
종류C-i수익증권	75	236	410	916
종류C-d수익증권	76	239	416	92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1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분배금

-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종류C-d 수익증권에 한하여 매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분배 전 순자산가치의 10% 이내에서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
 2. 분배금 지급일: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3.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은 경우 분배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은 좌수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분배금 지급일 제 3영업일 전일에 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

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투자자가 지정한 목표금액을 달성하여 자동환매되는 경우에는 적립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①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②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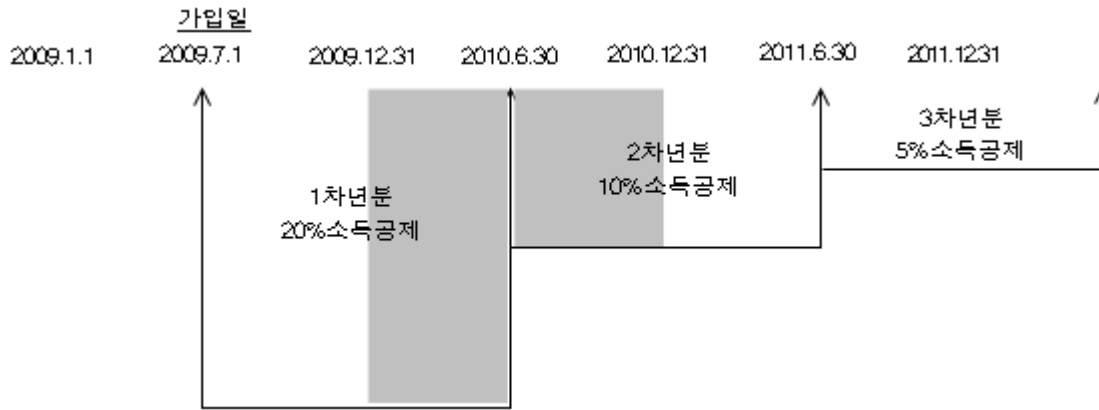
(라) 소득공제 비율

- ①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②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③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마)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①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②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바)계약 관련 유의사항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3년째 이후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 기 (2010.01.03 - 2011.01.02)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8 기 (2009.01.03 - 2010.01.02)	한영회계법인	적 정
제 7 기 (2008.01.03 - 2009.01.02)	한영회계법인	적 정

* 모든 재무정보는 운용펀드 기준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2011.01.02)	(2010.01.02)	(2009.01.02)
운용자산	107,058,063,955	250,921,889,313	221,864,885,050
증권	105,709,467,750	250,903,987,037	204,379,314,69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48,596,205	17,902,276	17,485,570,36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961,808,758	8,578,090,333	7,490,940,899
자산총계	111,019,872,713	259,499,979,646	229,355,825,94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493,230,899	6,656,942,040	6,305,291,751
부채총계	3,493,230,899	6,656,942,040	6,305,291,751
원본	91,340,141,408	264,574,183,215	385,429,042,748
수익조정금	-12,300,208,385	-33,887,647,680	-1,926,340,799
이익잉여금	28,486,708,791	22,156,502,071	-160,452,167,751

자본총계	107,526,641,814	252,843,037,606	223,050,534,198
손익계산서			
항 목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2010.01.03 - 2011.01.02)	(2009.01.03 - 2010.01.02)	(2008.01.03 - 2009.01.02)
운용수익	34,710,743,817	140,317,548,556	-152,396,247,116
이자수익	69,896,372	128,007,597	1,025,507,403
배당수익	1,502,049,490	1,851,075,048	4,507,369,496
매매/평가차익(손)	33,138,797,955	138,338,465,911	-157,929,124,015
기타수익	32,304,702	107,636,510	237,292,761
운용비용	2,137,777,701	6,586,302,073	8,008,477,913
관련회사 보수	2,103,179,061	6,408,836,763	7,881,515,963
매매수수료	34,598,640	177,465,310	126,961,950
기타비용	4,118,562,027	111,682,380,922	284,735,483
당기순이익	28,486,708,791	22,156,502,071	-160,452,167,751
매매회전율	459.66	393.01	247.79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9기(2011.01.02)		제8기(2010.01.02)		제7기(2009.01.02)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348,596,205		17,902,276		17,485,570,36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48,596,205		17,902,276		17,485,570,360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6,308,160,000		4,658,533,727		0
1. 콜론	2,808,160,000		4,658,533,727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500,0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99,401,307,750		246,245,453,310		204,379,314,690
1. 지분증권	99,401,307,750		246,245,453,310		204,379,314,69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961,808,758		8,578,090,333		7,490,940,89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308,545,662		6,849,996,481		4,430,714,12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259,506		1,797,889		2,433,354	
4. 미수배당금	651,003,590		1,726,295,963		3,057,793,425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11,019,872,713		259,499,979,646		229,355,825,949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493,230,899		6,656,942,040		6,305,291,75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706,265,808		391,164,270		2,448,893,018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784,620,344		3,350,472,603		1,509,893,786	
4. 수수료미지급금	2,344,747		2,747,562,667		2,346,504,947	
5. 기타미지급금	0		167,742,50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493,230,899		6,656,942,040		6,305,291,751
자 본						
1. 원 본	91,340,141,408		264,574,183,215		385,429,042,74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6,186,500,406		-11,731,145,609		-162,378,508,550	
(발행좌수 당기: 91,340,141,408 좌						
전기: 264,574,183,215 좌		28,486,708,791		22,156,502,071		-160,452,167,751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955.66 원		-12,300,208,385		-33,887,647,680		-1,926,340,799
(기준가격 당기: 578.71 원)						
전전기: 578.71 원)						
자 본 총 계		107,526,641,814		252,843,037,606		223,050,534,19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1,019,872,713		259,499,979,646		229,355,825,949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9기(2010.01.03-2011.01.02)		제8기(2009.01.03-2010.01.02)		제7기(2008.01.03-2009.01.02)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604,250,564		2,086,719,155		5,770,169,660
1. 이 자 수 익	69,896,372		128,007,597		1,025,507,403	
2. 배당금수익	1,502,049,490		1,851,075,048		4,507,369,496	
3. 수수료수익	32,304,702		107,636,510		237,292,761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1,615,780,638		168,275,998,830		34,110,197,098
1. 지분증권매매차익	60,858,977,508		164,371,722,181		26,219,057,22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756,800,000		3,795,130,111		7,839,528,404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552	
7. 기타거래차익	3,130		109,146,538		51,610,91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8,511,581,323		30,114,998,229		192,166,283,06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8,058,236,397		26,505,761,833		183,716,641,23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52,623,640		3,608,690,871		8,447,290,354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721,286		490,975		2,351,476	
8. 기타거래손실			54,550			
운 용 비 용		6,221,741,088		118,091,217,685		8,166,251,446
1. 운용수수료	530,307,655		1,576,209,901		1,938,405,346	
2. 판매수수료	1,537,882,109		4,728,629,693		5,815,216,018	
3. 수탁수수료	34,989,297		103,997,169		127,894,59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118,562,027		111,682,380,922		284,735,48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8,486,708,791		22,156,502,071		-160,452,167,751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311875024		0.083744006		-0.4162949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A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1.03 - 2011.01.02	0	0	1	1	0	0	0	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종류C1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1.03 - 2011.01.02	0	0	39	40	1,930	2,037	5	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종류C3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1.03 - 2011.01.02	0	0	39	40	1,930	2,037	5	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종류C4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1.03 - 2011.01.02	0	0	39	40	1,930	2,037	5	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 종류C5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1.03 - 2011.01.02	0	0	39	40	1,930	2,037	5	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 종류C-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1.03 - 2011.01.02	0	0	1	2	0	0	1	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 종류C-i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아. 종류C-d 수익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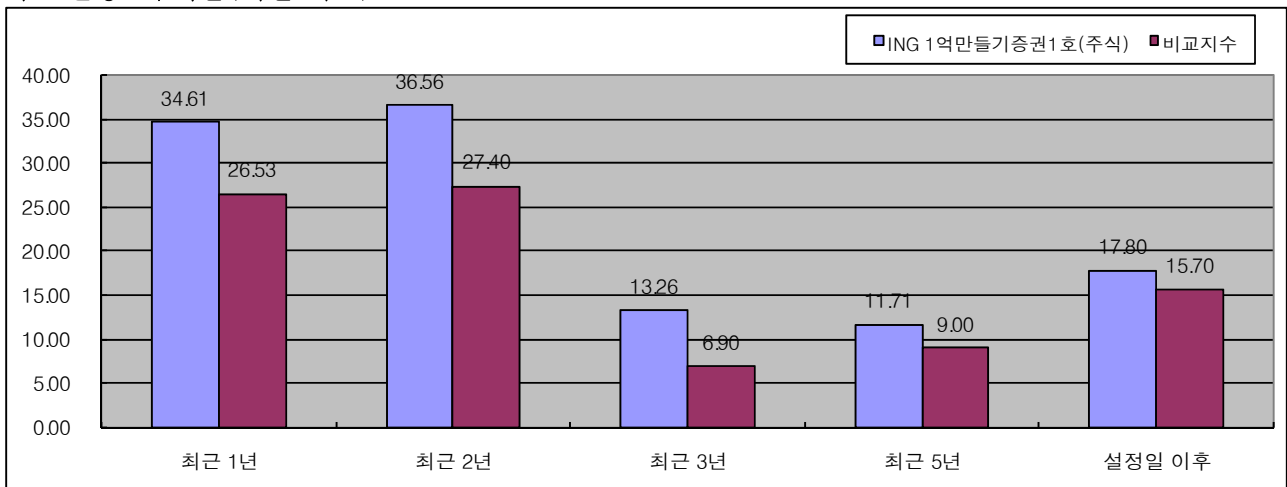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운용펀드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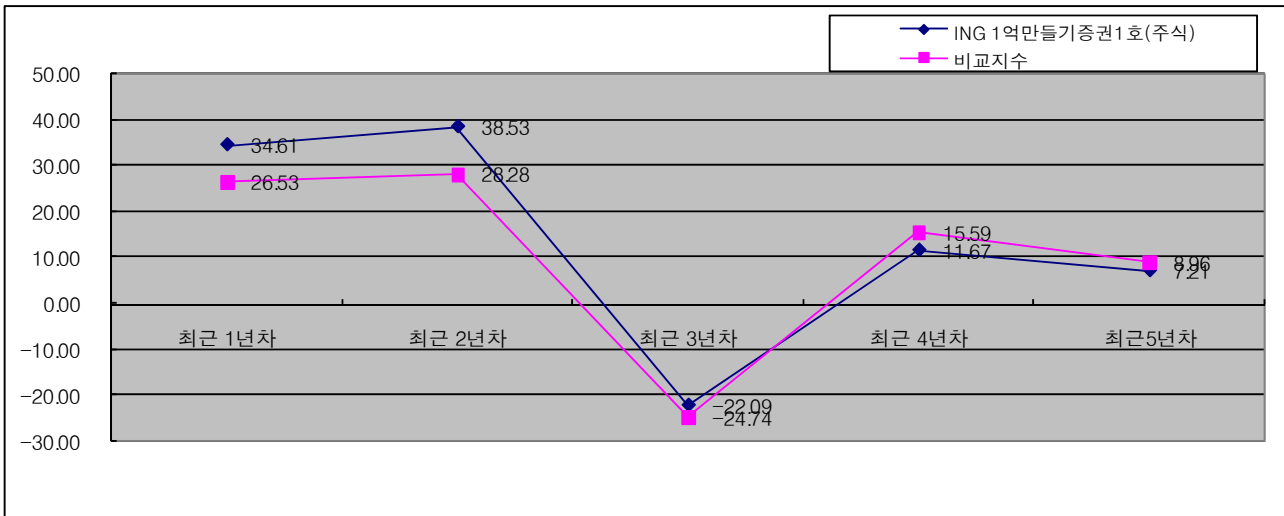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4.25 ~11.04.24	09.04.25 ~11.04.24	08.04.25 ~11.04.24	06.04.25 ~11.04.24	03.01.03 ~11.04.24
ING 1억만들기증권1호(주식)	34.61	36.56	13.26	11.71	17.80
비교지수	26.53	27.40	6.90	9.00	15.70
종류 A					40.30
비교지수					34.80
종류 C1	32.84	35.66	12.76	11.41	17.61
비교지수	30.28	29.28	7.94	9.63	16.11
종류 C-e					41.08
비교지수					34.80
종류 C2					-67.80
비교지수					-67.66

종류 C3					29.67
비교지수					-61.22
종류 C4					24.59
비교지수					-61.22
종류 C5					24.46
비교지수					-61.22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운용펀드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0.04.25 ~11.04.24	09.04.25 ~10.04.24	08.04.25 ~09.04.24	07.04.25 ~08.04.24	06.04.25 ~07.04.24
ING 1억만들기증권1호(주식)	34.61	38.53	-22.09	11.67	7.21
비교지수	26.53	28.28	-24.74	15.59	8.96
종류 A	40.30				
비교지수	34.80				
종류 C1	32.84	38.53	-22.09	11.67	7.21
비교지수	30.28	28.28	-24.74	15.59	8.96
종류 C-e	41.08				
비교지수	34.80				
종류 C2					
비교지수					
종류 C3	3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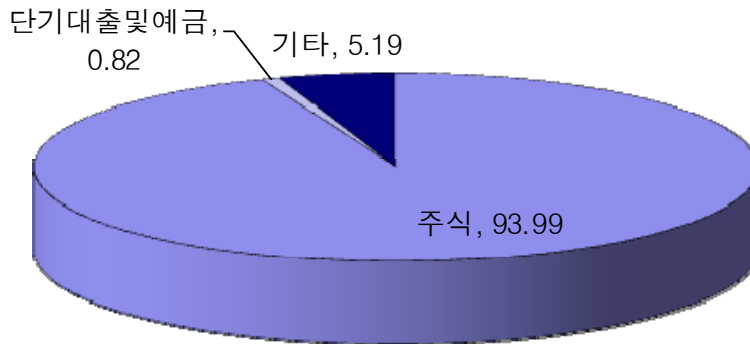
비교지수	15.84				
종류 C4	285.74				
비교지수	15.84				
종류 C5	285.34				
비교지수	15.84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0.04.02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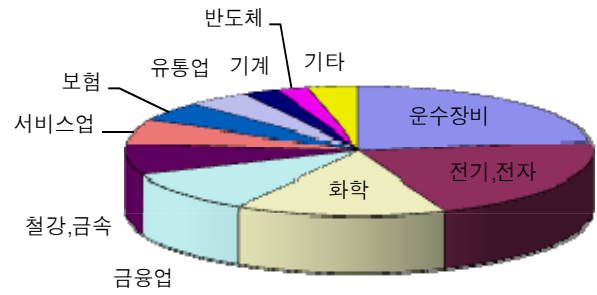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906	0	0	0	0	0	0	0	0	8	50	964
	(93.9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2)	(5.19)	(100.00)
합계	906	0	0	0	0	0	0	0	0	8	50	964
	(93.9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2)	(5.19)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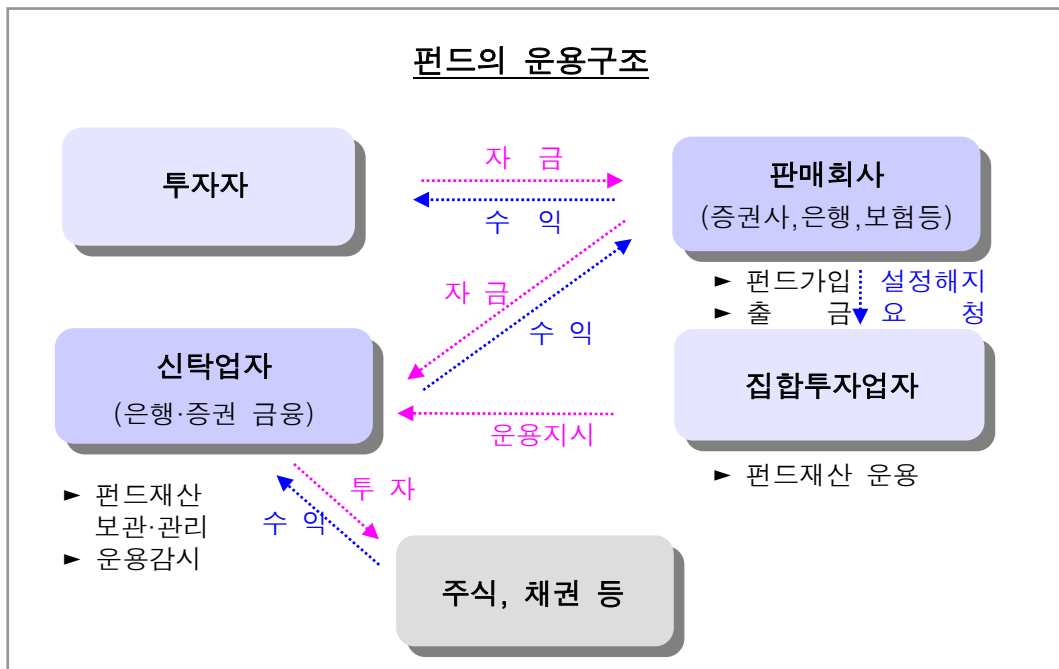
[주된 자산구성 현황 - 국내주식 업종 별 구성현황(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운수장비	209	23.03
2	전기,전자	190	21.02
3	화학	132	14.55
4	금융업	93	10.21
5	철강,금속	70	7.75
6	서비스업	53	5.84
7	보험	46	5.11
8	유통업	40	4.36
9	기계	23	2.49
10	반도체	20	2.19
11	기타	31	3.46
	합 계	906	100.01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ING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6층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ingim.co.kr
회사 연혁	<p><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p>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주) 설립</p> <p>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p> <p>1999.05.28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p> <p><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p> <p>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p> <p>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p> <p>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p> <p>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p> <p>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p> <p>2005.04.26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p> <p><ING 자산운용 주식회사></p> <p>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p> <p>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p>
자본금	273억(2010년 2월 기준)
주요주주현황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네덜란드) : 지분율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헤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10.03.31	' 09.03.31	계정과목	' 10.03.31	' 09.03.31
현금및예치금	364.0	493.3	영업수익	185.7	176.8
유가증권	3.4	3.4	영업비용	178.9	183.3
대출채권	0.9	0.9			
유형자산	6.4	11			
무형자산	98.3	118.4			
기타자산	53.8	63.4			
자산총계	526.9	690.4	영업이익	6.8	-6.6
예수부채	4.6	0	영업외수익	0	0.7
차입부채	0	0	영업외비용	0.1	0
기타부채	64.6	55			
부채총계	69.3	55	경상이익	6.8	-5.9
자본금	273.3	451.7	특별손익	0	0
자본잉여금	41.5	41.6	법인세	6.2	-4.9
이익잉여금	142.8	142.2			
자본총계	457.6	635.4	당기순이익	0.6	-10.78

라. 운용자산 규모(2011.4.10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585	5,038	5,293	0	870	316	0	8,201	24,302

*투자일임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해외 업무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연락처 : 1588-9999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으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

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ngi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p>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p>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p> <p>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합니다.

1. Unicef(세계아동구호기금)의 후원
2. 노후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관련 단체의 지원
3. 아동 및 장애우의 생활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관련 단체의 지원 등
4.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등

③ 상기기금은 투자신탁에서 추가로 인출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및 판매회사의 보수에서 인출하므로 수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계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교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